

영국의회에 상정된 「반론권에 관한 법률」

최근 영국에서는 사실과 다른 도도를 한 신문, 방송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단시민의 반론권 (the Right of Reply)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당의 토니 워싱턴(Tonny Worthington)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현재 제 2 차 독일을 120 대 0 으로 끝낸 것으로 보아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의원은 「현존하는 신문평의회가 언론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옹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소유자들이 만든 단체이므로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잘못된 신문보도에 대해 ①-반 시민들에게 법적 반론권을 주며, ②새로운 언론위원회(the Press Commi.sion)을 설치하며, ③명예훼손소송에의 법적 원조를 준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오보나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경우 그 정정기사는 원래의 문제된 기사와 같은 크기로 게재해야 하며, 다음의 가장 빠른 판에 게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언론사측이 정정기사의 게재를 거부할 때에는 언론강원회에 호소할 수 있으며, 동위원회는 28 철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의 신문평의회와는 달리 동위원회는 언론에 대해고등법원을 통한 정정보도게재의 명령들 내릴 권리를 보유한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21 명의 강원은 「영국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할만한 사람들」로 내무상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론권법안은 과거 5 년간에 걸쳐 3 회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었다. 본 자료는 지화노보부 해외노보관을 통해 입수했으며, 1988 년 12 월 21 일에 인쇄된 법률초안임을 밝혀 둔다..... 편집자 주

이 법률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문이나 방송의 부정확한 보도를 정정하고, 언론위원회를 설치하며,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반론권) (1)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사실적으로 부정확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은 그 부정확한 보도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반론권을 가진다.

(2)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전항에 의하여 규정된 반론권을 가질 경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바로 다음 호에 정정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3)정정기사는 무료로 게재되어야 하며, 원기사의 동일한 크기이어야 하고, 원 기사가 게재되었던 동일한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4)정정기사는 원기사의 정확한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이어야 한다.

제 2 조(언론위원회) (1)반론권에 관한 신청을 받고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언론위원회를 설치한다.

(2)위원회는 내무상이 임명하는 21 명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3)이 법률 부칙의 조항은 위원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위원들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장에서 상당한 기간 이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 조(신청권)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제 1 조에 규정된 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그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인)언론위원회에 반론권에 관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언론위원회에 의하여서만 처리될 수 있다.

제 4 조(신청에 대한 결정과 집행) (1)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제 1 조 제 1 항에 규정된 반론권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편집인(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이나 발행인, 또는 그들 모두에 대하여 제 1 조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2)위원회는 신청의 대상이 된 보도항목의 사실적 정확성만을 판정하여야 한다.

(3)사실적 정확성의 문제를 판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신청인과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이나 발행인 또는 그들 모두 및 신청의 대상이 된 보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위원회는 신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지 28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

(5)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의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관련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편집인과 발행인이 위 제 1 항에 의하여 내려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위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 5 조(반론권 상담인) (1)제 1 조에 의한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그 집행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론권 상담인 1 명을 둔다. 반론권 상담인은 1년 등 안의 그 활동에 대하여 매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이 법률 부칙의 조항은 반론권 상담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 6 조(위원회의 부수적 의무) 위원회는 그 활동 및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보도기준에 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도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권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7 조(비용) 사무장, 반론권 상담인과 위원회의 다른 직원들의 보수 및 비용과, 위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입은 내무상이 정한 제한범위내의 수입상실액을 보상하기 위한 비용은 의회가 정한 자원 중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률구조 조항) 1974 년의 법률구조법의 부칙 1 중 제 2 장 제 1 조는 이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다.

제 9 조(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액) 이 법률 시행 이후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은 이유를 붙인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10 조(약칭) 이 법률은 1989 년 반론권에 관한 법률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

부칙

-언론위원회-

제 1 조(위원회의 직원) 위원들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 위원들이 지시한 직무를 수행할 사무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2 조(상동) 사무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고, 위원들 과반수의결의에 의하여 그 직위로부터 해임될 수 있다.

제 3 조(상동) 위원들은 또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반론권 상담인) 위원들은 반론권 상담인과 그의 직무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들) 제 5 조에 의하여 내무상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부칙 8 조에 따라 지명된 후보자 명단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임명은 위원들이 영국사회의 인종, 성별 및 지역적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제 6 조(상동) 내무상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후보자의 지명은 이해관계집단에 요청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조(상동) 위원회는 21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최초로 임명된 위원들 중 3 분의 1 의 임기는 위원회 설립시로부터 1 년으로, 다른 3 분의 1 의 임기는 위원회 설립시로부터 2 년으로, 나머지 3 분의 1 의 임기는 위원회 설립시로부터 3 년으로 한다.

제 8 조(상동) 누구도 재임명 이전에 적어도 3 년의 간격 없이는 2 기이상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9 조(상동) 위원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일년에 적어도 2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문)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이 법률 제 1 조의 반론권이 있는지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정은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적어도 5 명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이 부칙상 규정된 위원회는 위와 같이 위원회의 결정을 할 권한이 부여된 합의부를 포함한다.